

(별첨2)

##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제 정 : 2007. 4. 4  
1차개정 : 2010. 4.28  
2차개정 : 2010. 7. 6  
3차개정 : 2015. 7.24  
4차개정 : 2015. 9.23  
5차개정 : 2019.12.10  
6차개정 : 2021. 1.15  
7차개정 : 2022. 8.26  
[8차개정 : 2022.11.29](#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 이라 한다)에 따른 공사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, 「무역보험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한국무역보험공사 정관」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임무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.

1. 제9조에 따른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
2.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임원후보자 심사
3. 제17조에 따라 사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경영계약안 협의
4. 제18조에 따른 임원후보자의 추천
5.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

**제4조(구성)** ① 이사회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

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의 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의결로써 정하되,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. 이때, 위원회 기간 중 비상임이사가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 비상임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승계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시행령 제24조의2의 경우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이사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은 법조계·경제계·언론계·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⑥ 위원회 위원은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·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,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%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⑦ 제5항의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공사 직원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.

⑧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공사의 비상임이사,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,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(이하 “노동이사”라 한다)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⑩ 이사회는 위원회 위원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전문기관, 관련학계·단체,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**제5조(직원대표자회의)** ①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직원대표자회의를 구성한다.

② 직원대표자는 직원을 1급부터 5급 직원, 사무직원 및 별정직원의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해당 직원그룹별로 1명을 선정한다.

③직원대표자는 각 해당그룹별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직원대표자회의는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며,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위원장)**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③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 비상임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(소집 및 의결방법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위원이 임원 후보로 응모한 사람과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등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은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.

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**제9조(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)** ①임원후보자에 대한 모집방법은 공사의 성격·결원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·공사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, 추천방식,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되, 사장후보자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노동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방식을 적용한다.

②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·인재추천·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.

**제10조(공개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)** ①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,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

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·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,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·추천방식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)** ①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,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, 관련학계·단체, 인사혁신처(국가인재 DB), 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추천받아야 한다.

1.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: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한 임원후보자 2명

2.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: 공사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, 공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**제12조(제출서류)** 임원후보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(사진첨부)
2. 자기소개서
3. 직무수행계획서
4.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

**제13조(임원후보자 직무수행요건)** ①사장 후보자는 기업 경영과 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별표의 직위별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.

②상임이사 후보자는 공사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별표의 직위별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.

③비상임이사 후보자는 경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별표의 직위

별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.

④감사 후보자는 조직운영과 경영에 대한 학식·경험 및 감시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30조(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) 및 시행령 제23조의2(감사후보자 추천기준)에서 정한 감사후보자 추천기준과 별표의 직위별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.

**제14조(결격사유)**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2.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②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·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 공사의 임원 직위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에 따른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공무원은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. 다만,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와 정부업무의 이관·위탁, 공사 업무 특성 등으로 해당분야 퇴직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1.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2.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

3. 공사와 법률·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및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

**제15조(심사원칙)** ①위원회는 제13조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타당하게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.

②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,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,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6조(심사절차)** ①위원회는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.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 기관특성,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임원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평가표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 서류심사를 실시한다.

③면접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표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라 실시한다.

④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,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순위를 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며, 동점자가

있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무기명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.

**제17조(경영계약안 협의)** 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계약안에는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및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후보와 협의된 경영계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임원후보자 추천)** ①위원회는 제16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, 직위 특성,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·추천할 수 있다.

②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(複數)로 추천해야 한다. 다만,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고, 그 이외의 임원은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,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(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·추천방식 병행 시 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한다), 위원회 회의록, [별지 제3호 서식]에 의한 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와 [별지 제4호 서식]에 의한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,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가 응모자·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.

⑥위원회가 제5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 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.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⑦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. 다만, 노동이사가

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천 또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.

**제19조(사무국 운영)**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②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
2.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조
3.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

**제20조(회의록 공개)** ①사무국은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정보의 공개범위 및 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21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, 「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

**제22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**제23조(그 밖의 사항)**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」은 폐지한다.

## 부 칙(1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6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7)

(시행일) 이 규정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정관(10차개정)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8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] 임원 직위별 자격요건

1. 사장

자격요건	세부기준
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전략 추진능력</li> <li>· 현안과제 진단 및 정책대안 제시 능력</li> <li>·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, 통솔력 및 위기관리능력</li> <li>· 혁신지향적 전략 수립을 위한 합리적 논리제시능력</li> </ul>
무역보험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무역·경제·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</li> <li>· 관련 업계에서의 실무경험 및 업적</li> <li>· 공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</li> <li>· 관련분야(경제·경영·법 등) 학위</li> </ul>
조직관리 및 경영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규모 공·사조직의 성공적 경영경험</li> <li>· 갈등해결을 통해 조직화합을 이끌었던 경험</li> <li>· 경영합리화 또는 혁신 등의 실적</li> <li>· 대내외 이해관계자 설득·융화를 도출하는 조정능력</li> </ul>
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적·도덕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소유</li> <li>· 도덕성·청렴성·책임감·준법성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</li> <li>·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</li> <li>·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</li> </ul>
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사 대변인으로서의 대외교섭력</li> <li>· 공사의 역할·위상 강화를 위한 신념 및 의지</li> <li>· 정부 정책방향,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해</li> </ul>

2. 상임이사

자격요건	세부기준
무역보험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무역·경제·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</li> <li>· 관련 업계에서의 실무경험 및 업적</li> <li>· 공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</li> <li>· 관련분야(경제·경영·법 등) 학위</li> </ul>
리더십 및 조직관리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전략추진 능력</li> <li>· 현안과제 진단 및 정책대안 제시 능력</li> <li>· 갈등해결을 통해 조직화합을 이끌었던 경험</li> <li>· 대내외 이해관계자 설득·융화를 도출하는 조정능력</li> </ul>
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적·도덕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소유</li> <li>· 도덕성·청렴성·책임감·준법성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</li> <li>·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</li> <li>·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</li> </ul>
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사 대변인으로서의 대외교섭력</li> <li>· 공사의 역할·위상 강화를 위한 신념 및 의지</li> <li>· 정부 정책방향,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해</li> </ul>

### 3. 비상임이사(노동이사 외)

자격요건	세부기준
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업 및 단체에 대한 경영경험 및 능력</li> <li>· 경영합리화 또는 혁신 정책 수립 능력 및 실적</li> <li>· 경영현황 진단 및 대안 제시 능력</li> <li>· 중장기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한 경영건제능력</li> </ul>
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적·도덕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소유</li> <li>· 도덕성·청렴성·책임감·준법성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</li> <li>·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</li> <li>·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</li> </ul>
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객관적·독립적 관점에 근거한 공사 정책 제시 능력</li> <li>· 무역보험공사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</li> <li>· 정부 정책방향,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해</li> </ul>

### 4. 비상임이사(노동이사)

자격요건	세부기준
3년 이상 재직 근로자	· 공사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소속 근로자
탈퇴·사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</li> <li>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상 노동조합의 조합원</li> <li>2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 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</li> </ul>

## 5. 감사

자격요건	세부기준
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규모 공·사조직 경영경험 및 경영능력</li> <li>· 중장기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한 정책추진력 및 경영 건제능력</li> <li>· 경영합리화 또는 혁신 정책 수립 능력 및 실적</li> <li>· 윤리경영·투명경영·청렴경영에 입각한 경영 견제역량</li> </ul>
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적·도덕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소유</li> <li>· 도덕성·청렴성·책임감·준법성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</li> <li>·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</li> <li>·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</li> </ul>
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무역·경제·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</li> <li>· 관련 업계에서의 실무경험 및 업적</li> <li>·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</li> <li>· 관련분야(경제·경영·법 등) 학위</li> <li>· 예산 및 회계, 감사업무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</li> </ul>
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감사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 능력</li> <li>· 무역보험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</li> <li>· 대내외 현황진단에 근거한 개선대책 제시 능력</li> <li>· 정부 정책방향,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해</li> </ul>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서

성명	(한문 :            ) )		생년월일	
연락처	주소			
	직장/직위			
	연락처	직장전화:	자택전화:	
		휴대폰:	E-mail:	
학력	기간	학교명	학과/전공	학위
주요경력				
추천사유				
추천인 인적사항	성명	(서 명)		
	직장/직위			
	연락처			

별    첨 : 노동이사 후보자 협약서

[ 별첨 ] 노동이사 후보자 확약서

## 확 약 서

본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27조의4 제2항에 따라 아래 자격 또는 직을 탈퇴·사임할 것을 확약한다.

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상 노동조합의 조합원
2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

20xx년 xx월 xx일

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이사 후보자  
성 명 (서명)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사장심사평가표(서류/면접)

응모자명	심사위원	(서명)				
평 가 기 준	배점	평 가 점 수				
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저조
		20	18	16	14	12
<b>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</b> ·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전략 추진능력 · 현안과제 진단 및 정책대안 제시 능력 ·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, 통솔력 및 위기관리능력 · 혁신지향적 전략 수립을 위한 합리적 논리제시능력	<b>20</b>					
<b>무역보험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</b> · 무역·경제·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· 관련 업계에서의 실무경험 및 업적 · 공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 · 관련분야(경제·경영·법 등) 학위	<b>20</b>					
<b>조직관리 및 경영능력</b> · 대규모 공·사조직의 성공적 경영경험 · 갈등해결을 통해 조직화합을 이끌었던 경험 · 경영합리화 또는 혁신 등의 실적 · 대내외 이해관계자 설득·융화를 도출하는 조정능력	<b>20</b>					
<b>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</b> · 사회적·도덕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소유 · 도덕성·청렴성·책임감·준법성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 ·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 ·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	<b>20</b>					
<b>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</b> · 공사 대변인으로서의 대외교섭력 · 공사의 역할·위상 강화를 위한 신념 및 의지 · 정부 정책방향,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해	<b>20</b>					
<b>합 계</b>	<b>100</b>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√”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## 상임이사심사평가표(서류/면접)

응모자명	심사위원	(서명)				
<b>평 가 기 준</b>	<b>배점</b>	<b>평 가 점 수</b>				
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저조
		25	23	21	19	17
<b>무역보험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</b> · 무역·경제·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· 관련 업계에서의 실무경험 및 업적 · 공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 · 관련분야(경제·경영·법 등) 학위	<b>25</b>					
<b>리더십 및 조직관리능력</b> · 공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전략 추진 능력 · 현안과제 진단 및 정책대안 제시 능력 · 갈등해결을 통해 조직화합을 이끌었던 경험 · 대내외 이해관계자 설득·융화를 도출하는 조정능력	<b>25</b>					
<b>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</b> · 사회적·도덕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소유 · 도덕성·청렴성·책임감·준법성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 ·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 ·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	<b>25</b>					
<b>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</b> · 공사 대변인으로서의 대외교섭력 · 공사의 역할·위상 강화를 위한 신념 및 의지 · 정부 정책방향,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해	<b>25</b>					
<b>합 계</b>	<b>100</b>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√”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## 비상임이사심사평가표(서류/면접)

응모자명	심사위원	(서명)				
<b>평 가 기 준</b>	<b>배점</b>	<b>평 가 점 수</b>				
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저조
		35	32	29	26	23
<b>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</b> · 기업 및 단체에 대한 경영경험 및 능력 · 경영합리화 또는 혁신 정책 수립 능력 및 실적 · 경영현황 진단 및 대안 제시 능력 · 중장기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한 경영건제능력	<b>35</b>					
<b>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</b> · 사회적·도덕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소유 · 도덕성·청렴성·책임감·준법성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 ·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 ·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	<b>35</b>					
<b>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</b> · 객관적·독립적 관점에 근거한 공사 정책 제시 능력 · 무역보험공사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 · 정부 정책방향,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해	<b>30</b>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저조
		30	27	24	21	18
<b>합 계</b>	<b>100</b>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√”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

## 감사심사평가표(서류/면접)

응모자명		심사위원				(서명)
<b>평 가 기 준</b>	<b>배점</b>	<b>평 가 점 수</b>				
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저조
		25	23	21	19	17
<b>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규모 공·사조직 경영경험 및 경영능력</li> <li>· 중장기 비전 및 전략에 근거한 정책추진력 및 경영건제능력</li> <li>· 경영합리화 또는 혁신 정책 수립 능력 및 실적</li> <li>· 윤리경영·투명경영·청렴경영에 입각한 정책 입안능력</li> </ul>	<b>25</b>					
<b>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적·도덕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소유</li> <li>· 도덕성·청렴성·책임감·준법성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</li> <li>·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질</li> <li>·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건강</li> </ul>	<b>25</b>					
<b>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무역·경제·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</li> <li>· 관련 업계에서의 실무경험 및 업적</li> <li>· 공사 업무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</li> <li>· 관련분야(경제·경영·법 등) 학위</li> </ul>	<b>25</b>					
<b>기타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감사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능력</li> <li>· 무역보험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</li> <li>· 대내외 현황진단에 근거한 개선대책 제시 능력</li> <li>· 정부 정책방향,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이해</li> </ul>	<b>25</b>					
<b>합 계</b>	<b>100</b>					

※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“√”표시하고,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



[ 별첨 1 ] 추천후보자 인적사항(기관장)

성명	출생	학력	주요경력
○○○	강원 60.3.10	·○○고(75) ·○○대 ○○학(78) ·○○대 ○○학석사(84) ·○○대 ○○학박사(88)	※최근 경력부터 4~5개 기재 ·○○○ ○○○(07~현재) ·○○○ ○○○(05~02) ·○○○ ○○○(02~00) ·○○○ ○○○(96~93) ·○○○ ○○○(93~87)
○○○	경북 52.3.4		
○○○ (女)	서울 58.9.4		

< 참고 >

- \*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(예 : 강원, 서울)
- \* 생년월일은 예(50.6.25)에 따라 기재
- \* 여성의 경우, 성명 밑에 (女)로 표기
- \*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~5개 정도를 기재

[ 별첨 1 ] 추천후보자 인적사항(견제임원)

성명	출생	학력	주요경력	이해관계유무
○○○	강원 60.3.10	·○○고(75) ·○○대 ○○학(78) ·○○대 ○○학석사(84) ·○○대 ○○학박사(88)	※최근 경력부터 4~5개 기재 ·○○○ ○○○(07~현재) ·○○○ ○○○(05~02) ·○○○ ○○○(02~00) ·○○○ ○○○(96~93) ·○○○ ○○○(93~87)	무
○○○	경북 52.3.4			무
○○○ (女)	서울 58.9.4			무

< 참고 >

- \*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(예 : 강원, 서울)
- \* 생년월일은 예(50.6.25)에 따라 기재
- \* 여성의 경우, 성명 밑에 (女)로 표기
- \*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~5개 정도를 기재
- \* 이해관계 심사 대상
  -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19조 제2항 해당여부
  - 갑을관계, 계약관계(금전급부가 있는 용역 등)에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
  - 자기 사업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
  - 그밖에 기관의 특성 및 영위사업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 유무를 판단
- ※ 자문,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참여는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

[ 별첨 2 ] 세부 추천사유(후보자별 상세사유 4~5가지 이상 기재)

성 명	현 직	추천 사유
○○○	○○대 00학과 교수	<p>* 해당직위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설명을 기술</p> <p>&lt;기관장의 경우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예) 학력, 경력, 저술활동 등 후보자의 특정 이력이 기관의 주요업무와 부합하는 전문성, 공익성 등이 있는 지</li> <li>- (예) 어느 면에서 기업경영과 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</li> <li>- (예) 어느 면에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지</li> <li>- (예) 후보자의 어느 분야 경력(또는 경험)이 기관의 어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지 등</li> </ul> <p>&lt;견제임원의 경우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예) 학력, 경력, 저술활동 등 후보자의 특정 이력이 기관의 주요업무와 부합하는 어느 분야의 전문성, 공익성 등이 있는 지</li> <li>- (예) 공공부문에서 어느 업무경험이 있는 지</li> <li>- (예) 견제임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어느 경력에 근거하여 갖추었는 지</li> <li>- (예) 어떤 분야의 경력(또는 경험)이 기관의 어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지 등</li> </ul>
○○○		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
○○○		<p>-</p> <p>-</p> <p>-</p> <p>-</p>

[별지 제4호 서식]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

1. 선발 개요

선발 직위

- ○ ○ 직위(○ ○ ○) 임기만료(13.8.7)에 따른 후임자 선발

선발방법

- 근 거 :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
- 방 법 : 공개모집
- 모집의 세부내용

구 분	기 간	인 원	접수 기간	비고
공개모집	13.6.28~7.11 (14일간)	10명 (여성: 1명)	13.6.28~7.11 (14일간)	

임원추천위원회 개최 : 13.6.27(월)~7.15(금)

- ※ 1차 : 13.6.27(월), 2차 : 7.13(수), 3차 : 7.15(금)

- \*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: 13.6.20(월)

- 응모자 10명중 3명을 ○ ○ 직위 후보자로 추천

2. 모집 개요

공개모집 공고

- 일간지 : ○ ○ 신문 공고(13.6.28)
- 홈페이지 : ○ ○ 공사 · ○ ○ ○ ○ 부 · 안전행정부 · 기획재정부·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(13.6.28~7.11)
- ※ 접수기간 : 13.6.28~7.11까지(14일간)

3. 응시자 현황 : 〇〇명 (접수순)

응시 번호	성 명 (생년월일)	학 력	주요 경력	비고
1	〇〇〇 (60.8.15, 男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〇〇고(74)</li> <li>· 〇〇대 〇〇학(78)</li> <li>· 〇〇대 〇〇학석사(81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최근 경력부터 4~5개 기재</li> <li>· 〇〇대 00학과 교수(현)</li> <li>· 〇〇도청 의회사무처장(06~05)</li> <li>· 〇〇도청 국장(00~05)</li> <li>· 〇〇도 〇〇위원회 이사(98~99)</li> </ul>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
4.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(총 〇명)

유형	성 명 (성별)	소속 및 직위	주요 경력	비고
비상임이사 (5명)	〇〇〇	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	· ·	-
	〇〇〇	"		-
	〇〇〇 (女)	"		-
	〇〇〇	"		-
	〇〇〇	"		-
이사회추천 (4명)	〇〇〇			농업계
	〇〇〇 (女)			여성계
	〇〇〇			학계
	〇〇〇			구성원 대변자